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벤처형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 폐지하고,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은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증원한 인력 2명(6급 2명)의 존속 기한을 2023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 복수 직급의 보임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국제협력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각 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시험검사정책과장 및 위생용품정책과장”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위해정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을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로,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을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각 과장”을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 및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으로, “보한다”를 “식중독예방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및 마약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을 “·마약관리과 및 마약예방재활팀을 두되, 의약품정책과장·의약품관리과장·의약품품질과장·임상정책과장·의약품안전평가과장·마약정책과장·마약관리과장”으로, “보한다”를 “마약예방재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마약예방재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2.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4.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평가 총괄
5. 사회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 단서 중 “15명”을 “16명”으로, “8명 및”을 “8명,”으로, “5명”을 “5명 및 행정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의약품안전국장”을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감사담당관·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임상연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정보화담당관·감사담당관·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임상연구과장 및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호 중 “수입유통안전과”를 “수입유통안전과,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수입관리”를 각각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마.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별표 1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치란 및 관할 구역란의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0”을 “1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을 “5”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4”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5”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59”를 “6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58”을 “65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1”을 “1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을 “5”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

관 “3”을 “4”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5”로 하며,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0”을 “114”으로 하고,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19”를 “116”로 하며,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를 신설한다.

총리령 제16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7월 31일”을 “2025년 7월 31일”로 한다.

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 중 “2023년 5월 31일”을 “2025년 5월 31일”로 한다.

총리령 제185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정원 8명”을 “정원 7명”으로 하고 “수의주사 8명”을 “수의주사 7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및 마약예방재활팀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및 마약예방재활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입검사관리과장이 분장하고, 마약예방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마약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2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명, 행정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 중 국제협력담당관,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에 대한 사항은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생략)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위해예방정책과 · 위해정보과 ·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 시험검사정책과 및 위생용품정책과를 두되, <u>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 ----- ----- ----- <u>위해예방정책과장 ·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 · 시험검사정책과장 및 위생용품정책과장</u> --- <u>기술서기관으로, 위해정보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u>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생략)	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수입식품정책과 · 현지실사과 · 수입검사관리과 · 수입유통안전과 및 <u>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u> 를 두되, 수입식품정책과장 · 현지실사과장 · 수입검사관리과장 및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u>디지털수</u>	② ----- ----- ----- ----- -- <u>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u> -- ----- ----- ----- ----- ----- <u>디지털수</u>

<u>입안전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u>입안전기획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u>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⑦ <u>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식품소비안전국) ① (생략)	제11조(식품소비안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소비안전국에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축산물안전정책과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및 식중독예방과를 두되, <u>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u>	② ----- ----- ----- ----- ----- <u>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 축산물안전정책과장 및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u> ----- <u>식중독예방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보건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약품안전국) ① ~ ③ (생략)	제12조(의약품안전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약품안전국에 의약품정책과 · 의약품관리과 · 의약품품질	④ ----- -----

과 · 임상정책과 · 의약품안전평가과 · 마약정책과 및 마약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⑨ (생략)

⑩ 마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
품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
보·교육

10. ~ 15. (생략)

⑪ (생략)

<신 설>

----- · 마약관리과
및 마약예방재활팀을 두되, 의
약품정책과장 · 의약품관리과장
· 의약품품질과장 · 임상정책과
장 · 의약품안전평가과장 · 마약
정책과장 · 마약관리과장--- 마
약예방재활팀장은 서기관 · 기
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식품위
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 약무사
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_____
_____.

1.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10. ~ 15.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⑫ 마약예방재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2.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5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8명 및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은 임기

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 품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4.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 · 운영 지원 및 평가 총괄

5. 사회재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16명 -----

----- 8명, -----

----- 5명 및 행정주

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u>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u>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u>소비자위해예방국장·의약품안전국장 및 독성평가연구부장을 말한다.</u>	① ----- ----- ----- -- <u>소비자위해예방국장</u> -----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u>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감사담당관·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임상연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은 임기</u>	② ----- ----- -- <u>정보화담당관·감사담당관·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임상연구과장 및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u> ----- ----- ----- -----.
제3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

기관 직제」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u>수입유통안전과</u>	2. ----- ----- ----- <u>수입유통안전과,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u>수입관리과</u>	4. ----- 가. ----- ----- <u>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u>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u>수입관리과</u>	다. ----- ----- <u>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u> ----- -----
<신 설>	라. <u>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u>
<신 설>	마. <u>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u>
<신 설>	바. <u>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u>

총리령 제16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6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2025년 7월 31일----- -----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 2025년 5월 31일-----
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85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85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8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8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정원 7명----- -----수의주사 7명-----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0</u>	<u>19</u>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6</u>	<u>5</u>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u>3</u>	<u>4</u>	+1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 관 또는 수석전문관	<u>4</u>	<u>5</u>	+1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59</u>	<u>660</u>	+1
·	·	·	
·	·	·	
일반직 계	<u>658</u>	<u>659</u>	+1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1</u>	<u>19</u>	-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6</u>	<u>5</u>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u>3</u>	<u>4</u>	+1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 관 또는 수석전문관	<u>4</u>	<u>5</u>	+1
·	·	·	
·	·	·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	<u>110</u> · ·	<u>114</u> · ·	+4
행정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 주사 · 의료기술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 ·	<u>119</u> · ·	<u>116</u> · ·	-3
<u>행정주사보 · 약무주사보 · 의료</u> <u>기술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u> <u>수의주사보</u> · ·	<u><신 설></u> · ·	<u>1</u> · ·	+1